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경력 ¹⁾	검직 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부사장	김태원 (金泰沅)	691018	2023.5.31. [(16.4.8(6)]	2025.3.31	국내1 부문장	코람코자산운용 (2016~현재)	-	결격사유 해당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 고
대표이사 부사장 (상임, 등기)	박형석 (朴炯錫)	671206	2023.3.31 [13.12.16(6)]	2025.3.31	코람코자산운용 (2013~현재) OrionPartners Korea(2007~2013)	-	-
(비상근)감사 (비상임, 등기)	김열홍 (金列弘)	670909	2023.3.31. [23.3.31(1)]	2026.3.31	코람코자산신탁 (2023~현재) ㈜HMC네트웍스 부대표 (2022~2023) 하나은행 지점장 (1993~2022)	별첨-1 참조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차정하 (車政河)	571008	2022.3.31 [21.3.31(2)]	2024.3.30	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Co-founder and Chair (2008~ 현재)	-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김정연 (金廷娟)	801013	2022.3.31. [22.3.31(1)]	2024.3.30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현재) 인천대법학부 교수 (2017~2020) 김·장법률사무소 (2012~2017)	-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송경순 (宋慶淳)	540114	2023.3.31. [23.3.31(1)]	2025.3.31	독립경제재무전문가 (KECG대표전문가) (2017~현재) 한국전문기컨설팅그룹대표 (2007~2017)	-	-
국내1부문장 부사장 (상임, 등기)	김태원 (金泰沅)	691018	2023.5.31. [16.4.8(6)]	2025.3.31	코람코자산운용 (2016~현재)	-	'23.5.31 사내이사 선임
국내2부문장 전무 (상임, 미등기)	최영선 (崔永善)	730207	2023.1.1. [21.1.1(3)]	2023.12.31	코람코자산운용 (2012~현재)	-	-
증권부문장 전무 (상임, 미등기)	이재길 (李在吉)	630309	2022.1.1 [18.7.16(3)]	2023.12.31	코람코자산운용 (2018~현재) 유진투자증권 (2007~18)	-	-

[별첨-1]

회사명	구 분	업 종	겸직업무	직 위	겸직기간
코람코 자산신탁	모회사	부동산 신탁업	코람코자산신탁의 사내이사	전무 (경영지원실장)	2023.3.31 ~ 2026.3.31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태원	직 위	부사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태원	직 위	부사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태원	직 위	부사장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종합 의견
위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함.

2023년 5월 31일

코람코자산운용 부사장 김 태 원 (인)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형 석 (인)

